	한국사	IV. 대한민국의 발전 38차시 : 반민특위와 농지개혁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해방이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

1. 친일파 청산

2. 농지개혁

★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

-일제의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

-제헌헌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'반민족행위처벌법'을 제정

→ 국회직속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 재판부 구성

7천여명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선정, 주요인물에 대한 조사와 체포

-범 국민적인 호응. 1949년 1월부터 활동 개시

but, 이승만 "좌익반란분자 색출이 풍부한 경찰관을 잡아들여서는 안된다"

> 우리가 건국 초창에 앉아서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요.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해되는 것보다... 국가의 기강을 밝히기에 표준을 두어야 할 것이니... 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대한 편이 가혹한 형벌보다 동족을 애호하는 도리가 될 것이다.

+국회프락치사건 – 반민특위소속 국회의원을 구속

결국...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개정되어

-친일파 처벌기한이 1950. 6. → 1949. 8.로 축소

-반민족행위의 범위 축소

⇒유명무실화

기소된 사람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사람은 이광수 등 축소

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한 건도 없었음

대부분 감형이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감

***반민특위 실적**

취급 건수	688건
재판 종결	41건
●사형	1건
●무기	1건
●유기 징역	13건
●공민권 정지	18건
●무죄	6건
●형 면제	2건

1948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

1.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·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,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.

4. 다음 각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로 공민권을 정지하고,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.

(1) 일제에 작위를 받은 자

(4)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

(6) 군,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

(8) 도, 부의 자문 또는 결의 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

(10)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

(11) 종교, 사회, 문화,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,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